학생지도위원회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Korea Aerospace University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09.6.1		16		
2	2023.2.27.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시행세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각 학부(과)장, 학생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 총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 업무
2. 학생 상벌 심의
3. 학생 자치활동 지도
4. 기타

제5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회의주관) ① 위원회는 학생처에서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 (보고)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